



朴大振
〈特許廳 審査官〉

改正 特許法에 있어서 多項制 研究(6)

〈前号에서 계속〉

(2) 시행령 제5조 제5항(택일적 기재)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항 번호가 택일적으로 인용된 종속항의 예》

1. 제3항 또는 제4항의 장치
2. 제3항 또는 제4항중 어느 하나의 장치
3. 제1, 2, 3항 또는 제4항의 장치
4. 제4항 내지 제7항 중 하나의 장치
5. 제4항~제7항 중 하나의 장치
6. 제1항~제3항 또는 제7항~제9항 중 어느 한 항의 장치
7. 상기 전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의 장치

《청구항 번호가 택일적으로 인용되지 않은 종속항의 예》

1. 제3항 및 제4항의 장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장치
3. 제1항~제3항의 장치

目 次

- I. 多項制 改善의 意味
- II. 從來 多項制의 考察
- III. 多項制와 關聯된 改善된 主要內容 比較
- IV. 特許請求 範圍의 記載의 考察
- V. 特許出願의 範圍(發明의 單一性)의 考察

〈고딕은 이번號, 명조는 지난 및 다음號〉

4. 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3항 또는 제4항의 장치

5. 상기 전 청구항의 장치

6. 제1, 2, 3항 및 제1항 또는 제4항의 장치

7.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제6항의 장치

이 규정은 「하나의 청구항에는 하나의 발명이記載」되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긴 하나, 예외적으로 다른 복수의 請求項을 인용함으로써 그記載가 다수의 발명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방법의 하나로 청구범위 전체가 不明瞭 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는 인용할 수 있는 請求項數를 제한하고, 또한 請求項의 인용방식에 있어서도 택일적인 기재 형식으로 규정하여 請求범위의 不明瞭한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제5항)은 「택일적」이라는 표현 문제상의 문제일 뿐 상술한 택일적 용어를 사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따라서, 從屬項이 「제3항 및 제4항의 장치」

라고 표현되어 있을 경우에는 2개의 項이 and 조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請求項의 기술적 내용이 不明瞭해 질 수 있다고 보아진다.

첨언하면 請求項의 記載내용에 있어서도 용어 「및」, 「또는」 등으로 인한 請求범위의 거절에 대한 시비가 흔히 일어날 수 있고, 또한 흔히 일어났고, 기술분야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어야만 될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러한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請求범위의 불명확성은 필히 한번 점검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IV-6참조)

<일본의 경우>

시행령 제5조 제6항 설명란 참조

(3)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수 從屬項의 二重引用 금지)

2이상의 項을 인용하는 從屬項은 2이상의 項이 인용된 다른 從屬項을 인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예15 ◆ (일본→가능)

1. (獨立項)
2. (獨立項)
3. (從屬項) 제2항에 있어서, ...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방법 (다수종속항)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방법 (부적합한 예)

상기 예 15와 같이 2이상의 청구항을 인용한 항을 다수종속항이라고 하고, 이를 다수종속항에는 인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다수종속항이 다수종속항에 인용됨으로써 청구항의 수가 조합, 분열에 의하여 증가되고, 이로 하여금 청구항이 不明瞭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구범위의 명확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수항인용형식으로 청구항을 記載하면 특허 청구범위의 기재를 간결·명료하게 할 수 있다.

즉, 아래 예 16과 같이 4개의 항으로 기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래 예 17과 같이 3개의 항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 예16 ◆

1. 특정구조를 갖는 에어컨 장치(X)
2. 풍향조절기구(A)를 갖는 청구항 1기재의 에어컨 장치(X+A)
3. 풍량조절기구(B)를 갖는 청구항 2기재의 에어컨 장치(X+A+B)
4. 풍량조절기구(B)를 갖는 청구항 1기재의 에어컨 장치(X+B)

◆ 예17 ◆

1. 특정구조를 갖는 에어컨 장치(X)
2. 풍향조절기구(A)를 갖는 청구항 1기재의 에어컨 장치(X+A)
3. 풍량조절기구(B)를 갖는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기재의 에어컨장치 (X+B 또는 X+A+B)

그러나, 반면에 무효심판의 경우 예를들면 상기 예16의 청구항 4에는 무효이유가 있고 청구항 3에는 무효이유가 없으면 특허는 청구항 별로 무효되기 때문에 청구항 3에 대해서는 무효되지 않고 남는데 대하여 예17에서 다수항 인용형식 청구항으로써 기재한 청구항 3은 일부의 무효이유를 갖지 않아도 포함된 그대로 「청구항 전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는불이익도 있다. 이경우 특허권자는 訂正심판에 의해 무효이유가 있는 청구항1 및 2를 삭제하고 그 일부에 무효이유를 갖는 청구항 3을 아래 예 17' 과 같이 訂正하여야 할 것이다. 이 예는 단순하게 청구항의 수가 적은 청구범위를 기재하여 설명하였지만, 특허출원인 경우는 통상 수십개의 청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 예17' ◆

(정정후)

1. 풍량조절기구 및 풍향조절기구를 갖는 특정구조의 에어컨 장치 (X+A+B)

<일본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일본의 인용형식 요건은 우리의 종속항 기재요건과는 상이하다. 즉, 인용항의 태일적인 기재에 대한 취급은 동일하지만 그 기재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다수종속항에 다수종속항의 인용을 허용하고 있다.

즉, 다수항 인용형식 청구항이란, 다른 2이상

의 청구항(독립형식, 인용형식을 不問한다.)을 인용하여 기재한 청구항을 말하며, 특허청구 범위 전체의 기재를 간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용된다.

이 형식에 의한 청구항은, 통상의 인용형식으로 복수의 청구항에 각각 기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기재면, 요건면에서의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파기, 무효심판의 단위로서는 하나이기 때문에 간추려서 파기 또는 무효의 대상이 되는 등의 단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통상의 인용형식 청구항으로 하느냐 다수항 인용형식 청구항으로 하느냐, 이러한 점을 충분히 비교한 후에 해야 할 것이며, 그 선택은 출원인의 자유이다. 따라서, 다수항 인용형식으로 청구항을 기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2이상의 청구항을 택일적으로 인용하고, 또한, 이들에 동일한 기술적 한정을 붙여서 기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특허법 시행규칙 양식 16「비고」 13참조)

(4) 시행령 제5조 제7항 (먼저 기재금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인용되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예18 ◆

1. 특정구조(A)와 특정구조(B)로 구성된 불베어링
2. 제3항에 있어서, 특정구조(B)는 (B')로 구성된 불베어링
3. 제1항에 있어서, 특정구조(A)는 (A')로 구성된 불베어링

상기 예18에서 보는 바와같이 제2항이 제2항이 제3항의 뒤에 계속하여 기재하여야만 특정구조(A)를 A'로 종속시킨뒤 특정구조(B)를 B'로 종속시켜 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A'+B')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전술한 바와같이 인용항은 인용하는 청구항에 계속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5) 시행령 제5조 제8항 (청구항마다 일련번호 기재)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청구항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각 청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하는 발명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항내에서도 개조체형식(a>, b>, c>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명료하고 간결하다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청구항에 연속적인 일련번호의 기재는 심사에도 용이하고 특히 요금산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에서 서술한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는 그것에 위반하는 경우 거절이유(특허법 제42조 제5항)는 되지만, 이의이유(특허법 제70조 단서) 혹은 무효이유(특허법 제133조)로는 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경우는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형식의 위반만으로 특허권의 내용인 발명에 실제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부분은 일본뿐만아니라 PCT에서도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 즉, 특허청구 범위는 각 청구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각 청구항에는, 그 기재의 순서에 따라 1로 시작되는 연속번호(아라비아 숫자)를 붙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다. 청구항 기재형식의 선택

이는 독립 청구항으로 기재하는 것과 종속 청구항으로 기재하는 것과의 선택에 관한 사항으로, 종속 청구항을 독립 청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거절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나, 종속형식 청구항으로 기재하는 편이 특허청구의 범위기재가 간결·명료해 짐에도 불구하고 독립형식으로 기재하는 것은 청구범위의 간결화·명료화의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출원인 자신도 그렇게 작성함으로써 아무런 장점도 없고 오히려 심사관은 청구항들간의 관

계를 알 수 없으므로 모든 항들을 분석해야 하고 또한 항들간에 실질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이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항제의 일부 취지는 종속형식을 사용하여 청구항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한 한 출원인은 청구항 기재가 수월한 방향으로 기재하려고 할 것이다.

5. 청구항에 따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안건에 대해서는 개정법 제4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고 종전의 규정과 특별한 차이는 없으나 다만, 종전의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에서 「작용」을 삭제한 것으로 그 삭제한 의미는 특별히 없다.

통상「작용」이라 함은 구성에 따른 작동관계를 말하고 있으나 화학분야의 경우는 실제적으로 「작용」이란 용어가 전혀 무의미하고 실무상 구성요건을 설명할 때 이에 관한 작용관계가 기술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를 구분하여 법령에 하나의 요건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상기와 같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종래와 다름이 없지만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이 일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도 이것에 수반되는 것이 일부 정립되어야 한다.

즉 1특허출원의 요건을 만족하는 1발명이 다면적 보호를 위하여 복수의 청구항의 기재가 자유롭게 되어 있고, 청구항마다 발명이기 때문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과 이에 대응되는 목적, 구성 및 효과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중에 기재하는 것을 출원인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나. 종래의 관념 (독립항과 종속항의 목적, 구성, 효과의 기재)

종래의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는 독립항과 종속항 관계를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명의 목적이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에 있는 경우는 거의 동일하고 그 효과면에서도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즉 「기술적으로 한정하고 구체화」하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왔다.

생각컨대, 이는 일본의 「필수요건항과 실시태양항」의 개념이 우리의 실무에 젖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요구나 반론의 제기가 전혀 없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는 실시태양항의 발명은 사실상 발명의 의의를 상실하고 있었고, 다만, 실시태양항에 한정조건을 갖는 것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는 진보성의 결여등을 이유로 하는 거절이유에 대해서 필수요건을 삭제하여 그 실시태양항 필수요건으로 할 수가 없는 것도 있다는 불이익이 생겼고 그러한 것이 있다는 지적이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개선다항제('88. 1. 1)에서는 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었고, 이에 상당하는 목적, 구성 및 효과 기재를 의무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항마다 발명”의 개념

우리는 개정법도 청구항의 개념을 도입하여 발명에 대한 다면적 보호를 위하여 다수의 청구항을 기재하도록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각 청구항은 항마다 권리행사를 하도록 규정[특허법 제215조 (2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및 특허권에 관한 특칙) 참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청구항으로부터 파악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 (혹은 청구항의 발명)은 어느 것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각 청구항에 대응해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될 필요가 있고 이렇게 기재함으로써 기술공개의 대가로서 각 청구항의 권리가 주장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상세한 설명란에 청구항의 발명에 따른 목적, 구성 및 효과기재가 없다면 개정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 예19 ◆

1. 미끄럼방지를 위한 횡간부(H)를 설치하고 그 횡간부의 양측에 로울러(B)를 끼운 타이어체인
2. 제1항에 있어서, 로울러(B)는 삼각형(B')로 형성된 타이어 체인

상기 예19의 청구항 2에 있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로울러가 삼각형인 것에 대한 기술적 의의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업자에게는 그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기술의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종속항은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형상 변경에 불과하다고 하여 청구항의 기재를 허용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2항의 로울러의 삼각형상으로 된 기술을 구체적으로 그 목적이나 구성의 상위에 따른 효과(양측에 로울러를 형성한 기술은 타이어의 지면압착시 양측의 마찰부분에 집중으로 설치하여 타이어 마모방지는 물론 마찰력을 증대시키도록 된 것이고, 더 나아가 로울러의 형상을 일반적으로 단순히 둥근형상보다는 삼각형상으로 함으로써 타이어가 지면과 압착시 지면과 타이어의 상호 작용으로 마찰력을 훨씬 증대시킬 수 있음)를 기재한다면 심사관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부가하여, 독립항의 기술적 표현이 종속항의 기술적 표현보다 일반적인 경우(소위 상·하위 개념관계)에는 종속항의 기술적 표현만으로도 그 표현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라. 중복기재의 생략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각 청구항에 대응해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상술하였다. 그러나 발명의 다면적 보호를 위한 복수 청구항의 기재에는 각 청구항마다 목적·효과는 당연히 중복되는 것이 많고 더우기 구성에 있어서도 그 일부가 중복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이와 같은 중복사항에 대해서 그 기재

를 의무화 한다면 제3자에게까지도 중복된 상황한 명세서에 의해서 오히려 이해를 방해하는 것이 되므로 그 중복부분의 생략은 당연하리라 사료된다.

다만, 기재를 생략함으로써 각 청구항의 대응관계가 불분명하게 된다면 전술한 원칙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이점에는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그 기재의 예로서 「청구항 1-3의 발명에 의해서 주어지는 목적(효과)은 XX이고 청구항 3과 4는 일부 동일하나 그 차이점은 ○○로 나타난다」라고 대응관계를 명기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6. 하나의 청구항의 기재내용

일반적으로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택일적인 구성요소가 동일기능을 갖고 또 동일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Markush 형식으로 기재한 경우

○다수인용형식으로 기재되는 경우

가. 택일적 기재를 포함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성의 택일적 기재는 구성요소가 동일기능을 갖고 또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택일적 기재로부터 하나의 공통개념이 용이하게 추출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 예20 ◆

(일본→동일)

1. 알루미늄박 또는 종이의 편면에 플라스틱 피막을 형성한 열융착포장재

알루미늄박 또는 종이를 포장재로 사용하는 것은 주지된 것이다. 이 예20의 발명에 있어 이러한 재료는 포장재로서 동일한 기능을 갖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알루미늄박 또는 종이」라는 기재로부터 하나의 공통 개념이 인정되고 특허받고자 하는 발명이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다.

또한, 화합물 등의 분야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메틸기, 에틸기 또는 n-프로필기를 「탄소수 1-3의 직쇄상 알킬기」로 나

타내는 것과 같이 동족적 또는 동류적 사항을 모아서 총괄한 상위개념 및 「수용성을 부여하기」와 같이 그것에 공통인 성질을 기초로 해서 복수의 사항을 총괄한 상위개념에 의해서 그것들을 서로 종합하여 하나의 청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택일적인 구성요소가 다른 기능을 갖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 경우에는 하나의 공통개념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청구항의 기재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없는 것이 된다.

(아래 예 참고)

◆ 예21 ◆ (일본→동일)

1. ...xx를 감지하는 수단으로 솔레노이드 벨브를 개폐하여 차량의 쿠손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서스펜션의 제어방법 또는 제어장치

예21의 청구항은 物로서, 표현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과 방법으로 표현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의 쌍방을 택일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재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EPC : 명확성 설명참조)

◆ 예22 ◆ (일본→동일)

1. 풍향조절기구(A)를 갖는 특정구조의 에어컨장치(X+A) 또는 풍량조절기구(B)를 갖는 특정 구조의 에어컨장치(X+B)

예22의 청구항은 풍향조절기구를 갖는 특정 구조의 에어컨장치(X+A)와 풍량조절기구를 갖는 특정구조의 에어컨장치(X+B)를 말한다. 각각 단독 청구항으로 기재한 사항(즉, 어느 쪽도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이다.)의 쌍방을 택일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그 기재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없는 것이다.

나. Markush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화학의 케이스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

면 한정할 수 없는 Class에 속하는 재료의 특별한 Group은 「Markush」의 표현을 사용하여 똑같이 청구할 수 있다.

Markush Group의 본래 목표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는 표현은 「A,B 및 C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재료(또 부재) [a material (or member) 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이다.

Markush 형식으로는 광의로는 택일적 기재를 포함하는 청구항의 형식 전반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화합물의 분야에 있어 토괄하는 상위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복수의 화합물을 택일적으로 기재하고 서로 종합해서 하나의 청구항으로 기재한 경우의 형식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종래 「물질특허제도 및 다항제에 관한 운용기준」에 의하면

- ① 화학구조상 동일한 특징은 갖고 또
- ② 성질이 유사한 것은 Markush 형식으로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Markush 형식으로 표현된 것은 하나의 발명으로 취급되고 역으로 상기조건 ①, ②를 만족하지 않는 Markush 형식으로의 표현은 하나의 발명으로 파악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그러나 개정법에서 출원의 단일성을 확대하는 것에 의한 Markush 형식의 기재조건 내에 「화학구조상 동일한 특징을 갖는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개정특허법 제37조 제2호의 주요부 동일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되고, 「성질유사」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동조 동호의 산업상 이용분야의 동일을 만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선다항제에서는 Markush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는 복수의 화합물을 복수의 청구항에 별도로 기재하는 것은 출원인의 자유이지만 이러한 것은 기재형식에 있어 가능한 출원인의 자유에 맡긴다고 하는 개선다항제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역으로 출원의 단일성을 만족하는 복수의 화합물 즉 개정특허법 제37조 제2호의 요건을 만족하

는 복수의 화합물에 있어서도 필요적으로 Markush 형식으로 하나의 청구항에 기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간체와 최종 생산물의 관계와 같이 비록 산업상 이용분리가 동일로 인정된다 해도 성질유사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Markush 형식으로서의 기재가 허용되는가 아닌가는 본래 출원의 단일성 문제로서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개정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2호의 요건, 즉 청구항의 기재로부터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되는가 아닌가에 입각한 것이고 1군의 화합물이 복수의 청구항으로 별개로 독립해서 기재된 경우에는 각 청구항으로부터 각각의 발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도 하나의 청구항에 Markush 형식으로 한데 합쳐진 경우에는 그것으로부터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고 거절이유가 된다.

이와 같은 취급은 개정특허법 제36조 제4항 제2조의 규정의 취지, 청구항을 기본 단위로 하는 요급체계로 보아도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고 개선탈항제에서 설명하고 있다.

다. 다수항 인용형식 청구항의 경우

청구항의 인용형식에 있어서 시행령 제5조 제4항에서 「종속항은 2이상의 항」을 인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5항에서는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조 제6항에서 「다수종속항은 다수종속항에 인용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어 청구항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형식적으로 명확하게 파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청구항에는 인용되는 청구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고 다수종속항은 다수종속항에 인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구범위 전체가 명확하도록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택일적인 청구항 인용방식 : 4-나-(2)}참조

〈계속〉

신간안내

발명기술 성공비결

(저자 : 김관형 본회 상근이사)

발명의 발상기법 · 연구 · 개발 · 도입 · 정보 · 실무와 성공의 마무리를 다룬 발명기술 성공비결'이 출판되어 나왔다.

이 책의 본문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발명기술의 개요와 발명기술기법 및 직무발명제도를 다루었다. 제2장에서는 발명기술 연구개발의 과정과 방법 및 실무처리 그리고 기술도입업무를 해설한다. 제3장에서는 발명기술개발을 위한 정보의

수집, 가공, 제공, 조사, 검색방법, 보관, 관리지침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발명기술개발실례를 통해 현장업무를 생생하게 소개한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의 실제경험과 깊은 연구와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쌓아온 발명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현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혁신의 흐름에 호응하여 완성하였다.

또한 여러가지 사례 및 통계자료, 도표를 곁들여 일반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경출판사, 10,000원>

※문의처 : 본회자료판매센터
(551-5571~2)

